

대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규정

개정 2022.03.04., 2024.04.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이하 “본교”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의거 대학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및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 및 실험고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등)를 대상으로 하되, 실기고사(예체능)는 예외적으로 적용에서 배제한다.

제3조(설치) 제2조에 따른 본교의 선발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대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6.03.31.>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본교의 교직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총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16.03.31.>
<개정 2022.03.04., 2024.04.29.>
- ③ 위원회는 입학팀 직원을 간사로 둔다.<신설 2016.03.31.><개정 2022.03.04.>

제5조(임기)

- ① 당연직의 임기는 당해 보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03.31.>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신설 2016.03.3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평가지기 및 반영) 매년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 대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

학전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3.31.>

제8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2(결과의 공시) 공고육정상화법 제10조 제2항에 다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신설 2016.03.31.>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03.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4.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